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94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충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13.

3. 회 부 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제적·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6(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에 있다고 인정하는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u> <u>1.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u> <u>2.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실·유기동물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 지원</u> <u>3. 「동물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 지원</u>

<신 설>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②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은 공공동물병
원의 시설 · 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동물병원 지정의 기준,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제17조의7(공공동물병원의 지정 취

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공공동물병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
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
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3. 제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보
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공동물병원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공공동물병
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공공동물병
원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

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제36조(청문)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동물병원의 지정취소</u> 2. 3. (현행과 같음)
--	--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¹⁾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기본적인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반려동물 진료병원이 1개소 이하인 시·군이 33개에 이를 정도로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에서는 동물병원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²⁾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 봉사동물 등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1) 한국소비자연맹의 설문조사*('21년)에 따르면 소비자의 82.9%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음

*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2) 전국 시·군 중 반려동물 진료 가능 병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33개('24년 기준)

시도	시군
강원(6)	양구, 정선, 철원, 태백, 화천, 평창
충북(3)	옥천, 증평, 보은
충남(3)	금산, 부여, 청양
전북(2)	무주, 장수
전남(7)	담양, 영암, 완도, 장성, 진도, 보성, 신안
경북(5)	성주, 울진, 청도, 영양, 봉화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 진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계층 간 진료격차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안 제36조 청문 조항에서

다만, 공공동물병원에서 교육 등을 하도록 한 개정안은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과대학 및 임상실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의학 전문 교육체계와의 역할 중복 등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대상이 수의사인지, 보조인력 또는 행정인력인지 여부와 교육 기능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 제36조(청문) 조항에서 청문의 주체에 ‘시·도지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동물병원 제도가 동물진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도 동의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이 공공동물병원 지정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은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에게도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지자체가 공공동물병원을 직접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공공동물병원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민간 동물병원의 경영 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존 동물의료체계의 균형을 저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체계, 인력 배치 등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기능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 1

기존 공공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사례

연번	시도	운영주체	위치	설치시기	규모		투입예산 (‘25년 기준, 백만원)	진료대상			진료건수 (건)
					면적 (㎡)	인력		취약계층 ¹	일반시민	유실·유기동물	
1	서울	지자체(서울시)	서울시 마포구	‘17년	611	수의사 3, 보조인력 9	343	X	X	O	1,688
2	서울	지자체(서울시)	서울시 동대문구	‘23년	553	수의사 2, 보조인력 13	395	X	X	O	1,791
3	대전	지자체(대전시)	대전시 유성구	‘14년	106	수의사 5	57	X	X	O	8,835
4	경기	지자체(여주시)	여주시 상거동	‘23년	795	수의사 4, 보조인력 3	199	X	X	O	7,139
5	경기	지자체(화성시)	화성시 마도면	‘14년	233	수의사 4, 보조인력 6	168	X	X	O	5,502
6	경기	지자체(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14년	1,197	수의사 1, 보조인력 2	63	X	X	O	3,623
7	경기	지자체(김포시)	김포시 운양동	‘24년	136	수의사 1, 보조인력 2	46	O	O	X	1,816
8	경기	지자체(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23년	146	수의사 2, 보조인력 3	110	O	X	O	1,753
9	경기	지자체(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20년	596	수의사 3	274	X	X	O	8,226
10	경기	지자체(시흥시)	시흥시 정왕동	‘22년	28	수의사 1, 보조인력 1	156	X	X	O	3,401
11	경기	지자체(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18년	616	수의사 1, 보조인력 1	57	X	X	O	15,381
12	전남	지자체(여수시)	여수시 평여동	‘25년	67	수의사 1, 보조인력 1	181	X	X	O	-
13	전남	지자체(순천시)	순천시 조곡동	‘23년	138	수의사 2, 보조인력 2	76	X	X	O	2,057
14	전남	지자체(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22년	101	수의사 1, 보조인력 1	103	O	X	O	2,838
15	전남	지자체(진도군)	진도군 진도읍	‘11년	421	수의사 1	17	O	O	O	2,296
16	경북	지자체(경주시)	경주시 천북면	‘21년	70	수의사 1, 보조인력 1	37	X	X	O	12,253
17	경남	지자체(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24년	130	수의사 2, 보조인력 1	450	X	X	O	-
18	경남	지자체(통영시)	통영시 광도면	‘21년	39	수의사 1	83	X	X	O	8,194
19	제주	지자체(제주시)	제주시 용강동	‘18년	95	수의사 4	67	X	X	O	7,700

* 공통적으로 조례를 설치근거로 두고 있음

* 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지자체별 진료대상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를 수 있음)